

내과분과전문의 제도에 관한 질의응답

내과분과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질의응답

문 1. 학술대회 제1발표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무엇입니까?

답 : 초록집의 표지(학회명, 일자, 장소 등이 명기되어야 함)와 수록된 초록을 함께 복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문 2. 종설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?

답 : 의학논평도 포함됩니다.

문 3. 연수 시행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부칙에는 199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?

답 : 연수교육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실시됩니다. 부칙에 표기된 시기는 규정이 발효된 날짜를 의미합니다.

문 4. 제4조 2항의 15평점은 연수강좌 및 실습교육만입니까?
학술대회도 포함됩니까?

(*제6조 2항은 학술대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)

답 : 분과전임의 1년간의 수련기간 중 10평점 이상의 연수강좌 및 실습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따라서 각 분과위원회는 최소한 15평점 이상의 연수강좌 및 실습교육을 개설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. 그러므로 15평점은 연수강좌와 실습교육만이고 학술대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.

내과분과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질의응답

문 1. 전임의 수련 시 타 분과의 중복수련을 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동시수련을 금지시킨 것인지 또는 2분과 이상의 전임의 수련을 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?

답 : 제9조 검직 및 중복수련금지 제1항의 타 분과의 중복수련금지 는 동시에 2분과 이상의 전임의 수련을 금지하는 것입니다. 더불어 말씀드리면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시행규 칙 제2조 응시자격 제1항에 의거 1년 이상의 수련과정을 수료 후 1년 이상의 실무에 종사한 자만이 응시자격이 있으므로 이 실무기간 중 타 분과의 전임의 수련을 받을시 이 기간 역시 중복수련으로 인정되어 실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응시자 격을 상실하게 됩니다.

문 2. 개업을 하다가 분과전임의 수련을 받고자 하는 내과전문의는 어 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?

답 : 제9조 검직 및 중복수련금지에 의거 의료기관 개설을 취소한 후에 수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문 3. 순환기분과 전임의의 별표 4의 수련내용을 보면 논문점수를 8평 점이상 취득하여야 되는데 수련기간인 1년 이내에 취득하여야 하는 것인지 실무기간이 포함된 2년 이내인지요?

답 : 별표 4의 서두에 밝힌 공통기준에서 논문 제출기간은 수련개시 일로부터 2년 이내이므로 이에 준하는 것입니다.

문 4. 군복무를 국군통합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. 국군통합병원도 전임 의 수련병원으로 지정이 가능한지요? 가능하다면 군복무중 정규 수련을 마칠 수 있는지요?

답 : 제11조 수련병원의 지정기준에 제2항 관계 별표 5 수련병원 지 정기준에 합당할 경우 국군통합병원도 전임의 수련병원 지정이

가능합니다. 그러나 군복무중 내과분과전문의 수련은 제9조 검
직 및 중복 수련금지예 의거 국방의무로 복무중인 자는 내과분
과전문의 수련을 받을 수 없으나, 국방의무가 아닌 장기 복무
시는 가능합니다.

문 5. 대학병원에서 전임의 수련 기간 중 4개월을 전임의 수련병원으로
지정을 받지 않은 분원에서 파견근무를 하였습니다. 이러한 경우
정규수련 1년을 마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?

답 : 제6조 수련과정 제2항 관계 별표 4에 명시된 타과파견 즉 혈액
종양분과의 치료방사선과 파견교육과 감염분과의 진단검사의학
과 파견교육 이외의 비교육적 파견근무는 수련근무로 인정되지
않습니다. 더불어 말씀드릴 것은 수련병원의 교육지도자로 관
리위원회에 보고 된 교육지도자가 장기해외연수나 근무 시 이
동 등으로 수련병원에서 장기간 봉직치 못한 경우 당연히 해당
전임의의 수련을 인정치 않게 됩니다.

문 6. 군제대후 5월부터 수련을 시작한 전임의는 다음해 4월말까지 수
련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소속 수련병원의 인사규정상 매년
3월 1일을 신규 또는 근무연장일자로 시행하고 있어 2개월을 더
근무키 위해 3월에 다시 수련연장신청을 낸다는 것이 현실적으
로 불가능합니다. 이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지요?

답 : 군제대후 내과 전공의 수련을 받는 경우에 준한 운용이 가능할
것입니다.

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인정 및 갱신에 관한 질의응답

문 1. '94년 2월 내과전공의 과정 수료 후 군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되어 1년 뒤 재검을 받게 됨에 따라 '95년 2월 군신체검사에서는 합격되어 입대하게 되었습니다. 한편 '98년 4월 제대 후 신생 대학 병원 알레르기내과 전임강사로 발령받게 되어 있습니다. 이러한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요?

답 : 제대 후 분과전문의 수련병원의 해당내과에서 1년간의 분과전문의 정규수련과 함께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후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.

문 2. '95년 2월 내과전공의 과정 수료 후 군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되어 내과분과전문의 정규수련을 1년간 받고 '96년 2월 군신체검사에서는 합격되어 입대하게 되었습니다. 이러한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요?

답 : 의무 군복무 기간이라도 실무종사에는 해당되므로 '97년 7월부터 실시되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

문 3. '95년 내과전문의 취득과 함께 1년간 정규수련을 받은 후, '96년 3월부터 1년간 해외연수를 다녀올 예정입니다. 이 경우 해외연수 후 '97년 7월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요? 다시 말해서 해외연수 기간을 실무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?

답 : 실무기간으로 인정됩니다.

문 4. 현재 수련병원 스태프로서 호흡기내과 분과전문의입니다. 향후 필요에 따라 감염내과 분과전문의도 취득하고 싶은데, 두 가지 분과전문의를 모두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지요?

답 : 서류심사에 의해 두 가지 분과전문의를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. 마지막 서류심사 시기인 1998년 10월 이전에 기존의

분과전문의를 포기한 후에 새로운 분과전문의 서류심사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취득하고자 하는 새 분과에서 정규수련을 받고 시험에 합격한 경우는 두 가지 이상의 분과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1년간의 정규수련과 함께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후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.